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15일, 임호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
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호선의원)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황충연)

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 근거 신설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 또는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해당 조종자에 대해 약물·환각물질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법은 조종자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관계공무원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단속과 예방에 한계가 있음.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인지능력 및 반응속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사고 발생시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한 사람이 약물·환각물질을 복용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아울러,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마약 등의 약물 영향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다만,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과 달리 조종자의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측정방법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단속 현장에서 기준과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집행상의 자의성이 확대되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측정 권한을 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측정방법을 명시하거나 최소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나.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조종면허 취소·정지 근거 신설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 또는 환각물질 복용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9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는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근거가 없어 조종자가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단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관계공무원의 약물·환각물질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를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측정 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해소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해양경찰청은 약물 또는 환각물질 영향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한 조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약물 조종은 인지·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해양사고의 중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실상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보다는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 또는 환각물질 복용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호의2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5 신설 등).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음주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는 형사처벌,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 단계에서 단속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약물·환각물질 복용 조종이 주취조종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위험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제재기준에 차이가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 또는 환각물질 복용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주취조종과 마찬가지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형사처벌을,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환각물질 복용 등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취조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를 살펴 보면, 「도로교통법」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 역시

약물·음주 여부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부 칙

개정안은 약물 또는 환각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하면서,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측정 장비 운용체계의 정비, 단속 인력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 마련 및 대국민 홍보 등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6개월은 다소 부족하므로 충분한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약물·환각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등 불이익적 행정제재처분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